

참고자료:

- [1] 한국전자거래진흥원(2002), “국내 E-business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세미나” 발제문
- [2] eBay (2005), 『Acquisition of Skype』
- [3] Hewett (2006), “Skype Update – What’s Next?,” Ovum
- [4] Hoover Online Database
- [5] Mangalindan (2005), “eBay May Buy Web Phone Firm,” Wall Street Journal
- [6] McGee (2005), “eBay/Skype: A Case for the Next Generation of Sales and Marketing,” Gartner
- [7] Skype (2005), “eBay to Acquire Skype”
- [8] Ward (2005), “Portal Bid Drives eBay Skype Deal,” BBC

북한 체신법 분석

국제협력연구실 책임연구원 공영일
(T. 570-4141, okay7@kisdi.re.kr)

1. 개 요

지난 '05년 12월 개성공단의 남북 직접통신망 개통을 계기로 통신부문에서의 본격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의 남북 직접통신망 개통은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의 통신편의성 제고 및 통신비용의 대폭적인 절감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직접통신망 개통을 위한 남북의 공동노력이 결실을 맺은 첫 번째 대규모 통신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통신부문에서의 협력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이번 개성공단 남북 통신망 개통을 통해 축적된 남북 상호간의 신뢰와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통신사업은 공단의 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늘어나는 입주기업의 통신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회선의 증설 및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 등 제공서비스 범위 확대 등 새로운 차원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남북직접통신망 개통, 북한지역의 통신망 현대화사업에의 참여 등도 본격적인 통신협력의 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향후 대북 통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과 정부는 북한지역 통신환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북한의 통신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 체신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북한 체신법의 제정 배경

북한에서 체신법이 제정된 시기('97년)는 김일성 사망('94)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해 관련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95년 형법 개정을 필두로 기밀법 제정('97), 검찰감시법 개정('97), 사회주의 헌법 개정('98), 사회안전단속법 개정('99)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북한에서 통신과 유선방송을 포괄하는 개념인 체신은 체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확고한 지휘통신의 보장이 체신법 제정의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장기간 침체되어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북한당국의 중요성 인식이다. 북한당국은 제3차 7개년계획('87~'93)의 실패와 심각한 경제침체에 따라 농업, 경공업, 무역증진에 중심을 두고 식의주문제 해결과 수출확대를 통한 외화획득을 목표로 하는 신경제정책을 추진하였다.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사회간접자본(전력, 통신, 철도, 도로 등), 중화학공업 분야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제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관련법제도의 정비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개정되거나 제정된 인프라 관련 법제들로는 전력법개정('95), 도로법 제정('97년), 자동차운수법 제정('97년), 에너지관리법('98년), 해운법 개정('98년), 철도법 개정('99년) 등이 있다.

3. 북한 체신법 주요 내용분석

통신, 우편, 방송분야의 북한 최초 종합행정법인 체신법은 1장 체신법의 기본규정(10개조), 2장 전기통신(8개조), 3장 우편통신(11개조), 4장 방송시설운영(8개조), 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10개조), 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5개조) 등 총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체신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북한 체신법 주요내용 요약

	주요 내용
제1장 체신법의 기본 (1~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법은 체신부문의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있음 •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체신 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 •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 함
제2장 전기통신 (11~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 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 조직 운영을 통해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지휘통신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함 • 체신 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이며, 통신선로를 현대화하고 전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해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함
제3장 우편통신 (19~2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 기관, 기업소는 우편물취급공정과 배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실현하여야 함 •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등을 지켜야 함 •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배송, 전달 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함
제4장 방송시설 운영 (30~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차질없이 해야 함 •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워야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우선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함 •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선방송 설비, 위성통신 송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38~4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 기관, 기업소는 전국적인 디지털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실시해야하며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해야 함 • 체신부문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은 체신의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함 •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노동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해야 함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8~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함 •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해야 함 • 통신, 방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밀 누설행위 등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음

가. 제1장 체신법의 기본(1~10조)

체신법은 체신을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으로 규정하고 체신기관, 기업소가 국가독점업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행정부처 및 주민들에 대한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지휘통신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설치된 산업전화의 운영과 증설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1년 전기통신법 제정시 “전기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운영하였으나, 기술발전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80년부터 순차적으로 경쟁을 도입하여 모든 통신서비스시장이 경쟁체제하에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78년) 이후 단계적인 통신서비스 자유화 및 경쟁도입으로 '00년 전신조례 제정 당시에 이미 경쟁체제를 구축하였다.

한편, 북한의 체신법은 체신을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시설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3가지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참고로 남한과 중국은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시설운영 등이 법률적으로 각각 분리되어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표 2> 북한, 남한, 중국의 통신, 우편, 방송 제도 및 체제 비교

	북한	남한	중국
관련법	• 체신법('97)	• 전기통신법('61), 우편법('60), 방송법('87) •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분리제정('83년)	• 전신조례('00년), 우정법('86), 라디오·TV조례 • 전신법 제정 진행중
경영주체 및 경쟁	• 통신, 우편, 방송 시설 모두 국가가 운영	• 통신: 국가독점 → 민간경쟁 • 우편: 국가독점(택배서비스 경쟁) • 방송: 공민영혼합체제	• 통신: 국가독점 → 공민영혼합체제 • 우편: 국가독점(택배서비스 경쟁) • 방송: 국영
통신에 대한 인식	• 체제유지 수단, 산업인프라	• 공공서비스, 산업인프라	• 산업인프라, 공공서비스
주무부처	• 체신성	• 정보통신부	• 신식산업부
통신사업 구조	• 정책과 사업 미분리	• 정책과 사업분리, 경쟁도입, 민영화	• 정책과 사업분리, 경쟁도입

나. 제2장 전기통신(11조~18조)

체신법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우선순위

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전신, 전화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되, 전망계획은 내각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신법은 통신선로 현대화, 전국 전기통신망 자동화, 통신시설 운영 컴퓨터화 등 통신의 현대화 강조하고 있으며 통신현대화를 위한 체신기관, 기업소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90년대 들어 낙후된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해왔으나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 미 수출관리규정 및 바세나르협정 등 국제적 규제에 의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체신법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구내전화설비에 대한 계획적 예방보수와 정비, 체신기관의 승인없는 전기통신시설 및 설비를 설치, 철수, 이설,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전화통화시 국가기밀을 누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 제3장 우편통신

체신법은 우편취급공정과 체송수단의 기계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전자우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03년 10월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전국체신일꾼대회에서 리금범 북한 체신상은 전국의 모든 시·군 체신소에서 공중 전자우편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평양 우체국이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신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신의 비밀 보장, 국제우편물의 우선적인 처리, 우편수송을 위한 여타기관의 협조, 우편용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 우편물 사고에 대한 책임 등은 우리나라 우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유사하다.

라. 제4장 방송시설운영

체신법은 방송시설운영을 체신기관의 중요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 방송의 내용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의 시설, 기재의 관리 및 운영은 체신성이 담당하는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 이원화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통신부는 무선기술 및 시설의 표준화를 위해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고 방송국 시설 및 기재의 관리·운영은 방송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신법에 규정하고 있는 유선방송을 통한 경보체제 구축 및 북한 주민의 유선방송 접근성 확보는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체신법은 체신 현대화를 위한 기반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은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체신의 현대화 및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생산, 연구, 인력양성에 대한 해당 체신 기관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바.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대부분의 북한 행정 법률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형식으로 법의 끝부분에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포함하고 있다.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앙기관의 지도와 통제를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하고 지도체계 확립,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

4. 체신법의 평가

북한 체신법은 법률제정 당시의 현실과 당면과제를 반영하고 있으며 통신 발달단계 관점에서 초기 수준의 법률로 평가된다. 체신(통신, 우편, 방송)이 국가독점으로 운영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와 깊이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체신법을 통신발전사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 우리나라 통신 현대화를 추진하던 70년대 초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체신법은 체제유지 차원의 정치적 기능과 체신의 현대화로 대별되는 경제적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통신은 철저한 국가독점 아래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지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체신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통신 인프라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도 북한당국의 이러한 체신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체신법은 장기간 침체되어온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으로의 통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비와 기술측면에서 북한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실질적인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 참여, 특히 남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한 통신의 통제와 통신망 현대화 추진을 위한 통신 개방이라는 상충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향후 북한 통신산업의 발전경로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자료:

- [1] 최현규 외, 『북한과학기술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4. 3
- [2] 연합뉴스, 「분단 60년만에 남-북 민간전화 연결」, 2005. 12. 28
- [3] 이석우·공영일, 「중국 전신법 제정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6. 16.